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제3조(낚시제한기준)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제6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제7조(낚시터업의 허가)
제8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0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제12조삭 제
제13조(낚시터업의 변경등록)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5조(방류 금지 어종 등)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제17조(영업구역)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제18조의2(운항규칙)
제19조(출항의 제한)
제20조(미끼기준)
제21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2조(보험 등 가입)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051-773-5538, 5539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제3조(낚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1. 22.>

제6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4. 17., 2024. 2. 6.>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2.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낚시터업의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2. 16.>

1. 낚시터의 명칭
2. 낚시터 관리선
3. 낚시터의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浮游型) 및 고정형(固定型) 시설물(이하 "수상시설물"이라 한다)
4.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②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2.>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구별수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어업인단체, 그 밖에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2. 낚시터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자
3.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나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산업 발전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개정 2020. 8. 26.>

1. 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내수면어업법」(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제8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물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낚시 대상 수산동물의 산란·성육(成育) 등 번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사용승인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제10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터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면적
2. 낚시터에 설치되는 시설과 장비
3. 낚시터업을 하려는 기간
4. 수면사용료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방이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해당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재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2조 삭제 <2016. 11. 22.>

제13조(낚시터업의 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2. 낚시터의 명칭
3. 낚시터 관리선
4. 수상시설물
5.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낚시터업 등록을 하려는 수면의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제15조(방류 금지 어종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은 다음 각 호의 어종을 말한다. <개정 2015. 2. 16.>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에 해당하는 어종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어종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종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물환경 보존의 한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 16.>

1.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라목1)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

2. 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나목2)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9. 2. 8., 2020. 2. 18.>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 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합성수지선·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0.>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27조 단서에 따른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1. 1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의2(운항규칙)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선박운항정지(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3. 시계(視界)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등의 부근 및 하천 폭이 좁은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항하여야 한다.
4. 시계가 제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6. 다른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근접하거나 경쟁적으로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7.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8. 낚시어선과 다른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9. 선착장 등으로 들어오는 낚시어선은 선착장 등의 밖으로 나가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0. 낚시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하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11. 야간운항을 하는 경우 안전 운항 및 승객의 승선·하선에 필요한 불빛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9조(출항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2., 2018. 4. 17., 2019. 2. 8., 2024. 2. 6.>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波高)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3. 기상청장이 제2호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를 발표한 경우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5.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다만, 별표 4 제1호카목 및 타목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대에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신고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미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 낚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문화 홍보 사업
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5.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6. 낚시 대상 어종의 개발·관리 및 외래 도입 어종의 이용을 위한 연구 사업
7. 그 밖에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5. 3. 25.>

1.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낚시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

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0. 2. 18.>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2. 18.>
1. 검정기관의 명칭
2. 검정기관의 대표자
3. 검정기관의 소재지
4. 검정대상
5.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본조신설 2016. 11. 22.]
[제목개정 2020. 2. 18.]

제22조(보험 등 가입) ①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낚시터업자의 경우: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낚시터 관리선을 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을 합산한다)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2.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 11. 22.>
1.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
3.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22., 2020. 2. 18.>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의 지정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22.>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낚시터업 승계 사실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24.]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36220호, 2026. 3. 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 관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11. 22.>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 관련)

낚시도구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낚시도구의 종류	유해물질명	용출 허용기준(㎎/㎏)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	납(Pb)	90 이하
	비소(As)	25 이하
	크로뮴(Cr)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비고
1. 낚싯바늘 및 낚시찌의 경우에는 금속재료를 추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낚싯줄의 경우에는 주원료가 금속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삭제 <2016. 11. 22.>

[별표 2]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3.23>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	기준
1. 낚시인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장비	가. 낚시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1) 구명부환(救命浮環) 및 구명줄	추락사고 발생 시 낚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적합할 것
	2) 소화기	화재사고 발생 시 화재의 확산 방지 및 진압에 적합할 것
	3) 붕대, 거즈 등 구급약품	부상당한 낚시인에 대한 응급처치에 적합할 것

	나. 수상시설물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1) 선체(船體)	부양성 및 복원성이 있는 선체일 것
	2) 배수설비	시설물의 규모에 적합한 설비일 것
	3) 계선 및 계류설비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시설물의 위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설비일 것
	4) 전기설비	수상시설물에 설치하는 전기기계의 안전성에 적합한 설비일 것
	5) 구명 및 소방 설비 등 안전설비	추락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보호에 적합한 설비일 것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	
2. 낚시인의 편의에 필요한 시설·장비	가. 낚시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1) 화장실 등 위생설비	낚시터를 이용하는 낚시인의 위생보호에 적합한 설비일 것
	2) 수거한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	
	나. 수상시설물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1) 화장실 등 위생설비	수상시설물을 이용하는 낚시인의 위생보호에 적합한 설비일 것
	2) 쓰레기통 등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	수상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	
3. 낚시터의 관리	가. 낚시터 관리 시설	낚시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적합한 시설일 것

에 필요한 시설·장비	나. 방송 또는 통신 시설	낚시터의 운영·관리 및 비상상황의 전파 등에 적합한 시설일 것
	다. 낚시터 관리선(낚시터를 관리하거나 낚시인을 수상시설물 등으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일 것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수량과 세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1. 16.>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종류
1.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이나 낚시를 이용하여 낚시터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별표 4]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2. 18.>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설비
1. 안전·구명 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파.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2.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다. 삭제 <2019. 2. 8.> 라. 삭제 <2019. 2. 8.> 마. 삭제 <2019. 2. 8.> 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별표 5]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제20조 관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 5.>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제20조 관련)

미끼의 종류	특정물질의 함량기준
1. 가공미끼[어분(생선가루)·감자전분 등 동물성·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다음의 물질은 가공미끼의 원료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인체 또는 수산동물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된 물질 2) 생배설물, 소변, 장 내용물, 수술 후 적출물(반추위추출물은 제외한다) 3) 목재보호제(약품) 처리를 한 나무 또는 톱밥 4)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 슬러지 5) 비닐 등 농어업용 포장재 나. 다음의 물질은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만 가공미끼의 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table>
<tr><td></td><td>
<table>
<tr><th>물질명</th><th>허용기준</th></tr>
<tr><td>비소(As)</td><td>10㎎/㎏ 이하</td></tr>
<tr><td>크로뮴(Cr)</td><td>100㎎/㎏ 이하</td></tr>
<tr><td>카드뮴(Cd)</td><td>2.5㎎/㎏ 이하</td></tr>
<tr><td>인(P)</td><td>2.7% 이하</td></tr>
</table>
</td></tr>
<tr><td>2. 인조미끼(납·철·세라믹 등 금속성·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td><td>인조미끼는 다음의 특정물질 용출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table>
<tr><th>물질명</th><th>용출 허용기준(㎎/㎏)</th></tr>
<tr><td>납(Pb)</td><td>90 이하</td></tr>
<tr><td>비소(As)</td><td>25 이하</td></tr>
<tr><td>크로뮴(Cr)</td><td>60 이하</td></tr>
<tr><td>카드뮴(Cd)</td><td>75 이하</td></tr>
</table>
</td></tr>
</table>

[별표 5의2]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2 관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4. 11. 26.>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지정기준
1. 조직	가. 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검사 등의 품질 및 안전성 검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검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나.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검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검정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2. 인력	검정의 실시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검정원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검정원 중 2명 이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에서 화학·환경공학·식품공학·식품가공학 등 이학·공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사람 다. 낚시도구, 미끼 또는 그 밖의 생활용품의 검사·검정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설 및 장비	검정하려고 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함량과 용출 정도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다만, 대학 및 연구소 등 공인된 실험·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분석업무를 위

	탁수행하는 경우에는 실험 시설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비고

제3호에 따른 실험 시설 및 장비의 규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1.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2)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반행위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사실 또는 사업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경우. 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보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4)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호	20	40	80
나. 법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호	50	50	50
다. 법 제7조제2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3호	50	50	50
라.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4호	80	80	80
마.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5호	75	150	300
바.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6호	75	150	300
사.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1호	100	100	100
아.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7호	75	150	300
자. 법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8호	75	150	300
차.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9호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10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0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카. 법 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폐업·재개 또는 휴업 기간 연장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2호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10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0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3호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10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0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파.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0호	100	200	300
하. 법 제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3호의2	100	100	100
거.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1호	75	150	300
너.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1호의2	100	200	300
더. 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3호의3	25	50	100
러.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2호			
1) 승선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하거나 조종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30	60	120
2) 승선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후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50	100	200
머.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	법 제55조	5	10	20

선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4호			
버. 법 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3호	50	100	200
서.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4호	50	100	200
어.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5호	50	100	200
저.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6호	25	50	100
처.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7호	75	150	300
커.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6호	100	100	100
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8호			
1)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300	300
퍼. 법 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7호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10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0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허.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9호	75	150	300
고. 법 제42조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에 대한 회수·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0호	300	300	300
노.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8호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10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 40		
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1호	50	75	100
로. 법 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2호	50	75	100
모. 법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원을 근무하게 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3호	50	75	100
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4호	300	300	300
소.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5호	300	300	300

3. 개별기준의 적용

가. 제2호가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반복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적용한다.

나. 제2호차목부터 타목까지, 퍼목 및 노목의 경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으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